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331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오은애

피 고 1. B

2. 신용보증기금

3. 이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10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피고 신용보증기금, 이천시는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B,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이천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이천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보원

별지